

# 열 공 급 규 정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 목 차

## 제 1장 총칙

- 제 1조 목적
- 제 2조 적용
- 제 3조 규정의 신고 및 변경
- 제 4조 세부사항
- 제 5조 열공급구역
- 제 6조 용어의 정의

## 제 2장 사용신청 및 수급계약

- 제 7조 사용신청
- 제 8조 공급동의
- 제 9조 수급계약의 성립, 변경
- 제10조 계약량의 결정
- 제11조 명의변경 및 권리의무의 승계
- 제12조 수급계약의 폐지

## 제 3장 열의 공급방법

- 제13조 열공급방법
- 제14조 열공급조건

## 제 4장 열의 사용

- 제15조 열사용에 따른 열사용자의 협력
- 제16조 공급의 제한 또는 중지
- 제17조 공급정지와 해제
- 제18조 손해배상의 면책
- 제19조 대관업무 협조

## 제 5장 열공급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제20조 시설의 설치 및 건설비용 부담
- 제21조 수급지점 및 재산한계점

- 제22조 보완 및 유지관리의 책임한계
- 제23조 상대방 구내출입
- 제24조 조사 및 통보
- 제25조 조사의 종류
- 제26조 보안 및 조사에 대한 열사용자의 협력
- 제27조 공사의 시행 및 열사용자 시설의 개선
- 제28조 보수공사에 관한 협조
- 제29조 보안통신설비

## 제 6장 열사용량의 계량 및 요금

- 제30조 계량설비의 부설
- 제31조 계량설비의 검사
- 제32조 계량설비의 허용오차
- 제33조 검침
- 제34조 사용량의 계량
- 제35조 사용량의 협정
- 제36조 요금의 계산
- 제37조 단수처리
- 제38조 일수계산
- 제39조 요금의 청구 및 납부
- 제40조 요금정산
- 제41조 열사용요금

## 제 7장 기타

- 제42조 문서의 기록 및 보존

## 부칙

## 제 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이하 “공급자”라 합니다)가 열공급구역 내의 열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할 때의 열사용요금, 공급조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열공급구역 내의 열사용자에 대한 열공급에 관하여 적용합니다.

### 제3조(규정의 신고 및 변경)

(1) 이 규정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였습니다.  
(2) 이 규정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4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이 규정의 취지에 따라 열사용자와 공급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열공급구역)

열공급구역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 구역으로 합니다.

### 제6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① “열”이라 함은 공급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증기를 말합니다.
- ② “열사용자”라 함은 공급자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열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③ “열공급시설”이라 함은 열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시설과 동 목적에 부대되는 통신, 계장등 일체의 시설을 말합니다.

## 제 2장 사용신청 및 수급계약

### 제7조(사용신청)

(1) 열사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열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이 규정을 승인하고 열사용 내용을 기재한 공급자 소정 양식의 열사용신

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열사용자가 사용내용의 변경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기재한 열사용(증설,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공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8조(공급동의)

(1) 공급자는 열사용자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열 공급에 동의합니다.

- ① 사용장소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구역이 아닌 경우.
- ②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공급이 제한된 경우.
- ③ 이 규정 이외의 조건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 ④ 사용신청 내용이 전체 열사용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된 경우.
- ⑤ 열공급시설 및 열사용자 시설 상황에 따라 열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2) 공급자는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사용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열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제9조(수급계약의 성립, 변경)

(1) 열사용자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공급자가 공급을 동의한 경우 공급자와 열사용자는 수급계약기간, 수급조건 등 수급내용을 협의하여 결정 후 수급계약을 체결합니다.  
(2) 수급계약은 공급자와 열사용자가 상호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변경 또한 같습니다.

### 제10조(계약량의 결정)

열사용자의 열수급시설 용량을 계약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열사용자의 향후 최소 2년 이상의 수요 추정량과 열 공급시설의 공급능력의 범위를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제11조(명의변경 및 권리의무의 승계)

(1) 열사용자 시설의 소유 또는 운영권에 대한 명의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신사용자는 공급자 소정의 양식(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명의변경을 해야하는 신사용자는 전사용자와 공급자 간의 수급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서면을 미리 공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신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명의변경 신청 없이

전사용자와 동일장소에서 열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급자는 신사용자가 전사용자의 공급자에 대한 열사용에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 명의변경은 소유권 또는 운영권의 양도계약 설립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제12조(수급계약의 폐지)**

- (1) 열사용자가 열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폐지희망일을 정하여 폐지희망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2) 제(1)항의 통지가 있을 경우, 공급자가 열사용자의 폐지희망일에 공급을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급 계약은 폐지희망일에 폐지됩니다.
-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이 정지된 열사용자가 정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급자는 서면으로 사전 통보함으로써 수급계약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 (4) 공급자와 열사용자는 상호 협의하여 본 조에서 정한 폐지사유 외 별도의 폐지사유, 폐지시 처리방안 등을 수급계약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5) 수급계약기간 중의 채권, 채무는 수급계약이 폐지된 후에도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제 3장 열의 공급방법**

**제13조(열공급방법)**

- (1) 공급자는 수급계약이 체결된 열사용자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시설의 점검, 기타 소정의 절차를 완료한 후 수급개시 예정일에 열을 공급합니다.
- (2) 열사용자에 대한 열공급은 연중 계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3) 공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급개시 예정일에 열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열사용자에게 통보합니다.

**제14조(열공급조건)**

(1) 열공급조건은 공급자의 압력별 증기모관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급조건	
	온도 (℃)	압력 (kg/cm <sup>2</sup> G)
고압 증기 (SH)	약 300	45
중고압 증기 (SMH)	약 270	35

중압 증기 (SM)	약 250	25
저압 증기 (SL)	약 200	10

※ 단, 사용장소의 거리에 따라 수급지점에서의 공급조건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2) 열공급기간, 공급시간, 실시기일 및 기타의 공급조건은 공급자와 열사용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공급자는 열사용자와 협의하여 열사용자의 열 사용에 따른 결과로 생성된 응축수의 회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응축수 회수요금은 (별첨1) 열사용 요금 산정기준에 의합니다.

**제 4장 열의 사용**

**제15조(열사용에 따른 열사용자의 협력)**

열사용자는 열공급시설의 전 계통이 안전화되어 각 공장이 순조로운 가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① 열사용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급자와 열사용자가 사전 협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공급자와 열사용자는 열 공급 및 사용에 따른 운전책임자를 지정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 ③ 열공급계통의 안정을 위하여 공급자는 계통의 운전조건에 따라 열사용자에게 열사용량의 최대 허용변화량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 ④ 열사용자는 공급자가 지정통보한 량을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공급자 동의를 득한 후 동 사용량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 ⑤ 열사용자의 부지중에 공급자가 지정 통보한 량 이상으로 사용량의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열사용자는 즉시 그 사유를 공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⑥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급자가 열사용량의 제한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열사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이러한 사용량 제한 조치를 최단시간 내에 해소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합니다.
- ⑦ 열사용자는 불의의 사고로 계통부하 조정이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⑧ 공급자 및 열사용자의 안정적 공장조업을 위해 열사용자는 매월 개시 10일 전까지 당해월을 포함한 향후 3개월간의 일별 소요량을 추정하여 공급자에게 메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열공급계획 (월간)을 수립합니다. 또한, 공급자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열사용자는 매년 9월 15일 까지 차기 년도 유틸리티 사

용계획을 월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일정은 양측이 사전 조율할 수 있습니다.

### 제16조(공급의 제한 또는 중지)

(1)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열공급을 제한 또는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열공급시스템이 심히 불안정한 상태로 되었거나 불안정한 상태로 될 우려가 있을 경우.
- ② 열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열공급시설의 보수, 변경 기타 운전상 부득이한 경우.
- ③ 법령에 의하여 열사용이 제한된 경우.
- ④ 비상 재해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 ⑤ 열사용자가 계약용량을 초과하여 열을 사용함으로써 전체 열사용자에 대한 안정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⑥ 기타 보안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제(1)항에 의한 열공급의 제한 또는 일시 중지시에는 제한 또는 중지하는 날의 5일 전에 그 내용을 열사용자에게 미리 통보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제한 또는 일시 중지 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3) 공급자는 제(1)항의 조치가 열사용자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최단 시간 내에 이 조치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제17조(공급정지와 해제)

(1)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열사용자에 대하여 열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열사용자가 열공급시설의 개조, 변조, 훼손, 조작 등에 의하여 열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 ② 열사용자가 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배함으로써 인하여 열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 ③ 열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보안상의 위험을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열사용자가 열사용자 구내에 있는 공급자의 열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하거나, 망실하여 공급자에 중대한 손실을 주었을 경우.
- ⑤ 열사용자가 열사용 요금 및 기타 이 규정에 의하여 지불해야 할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2) 제(1)항에 의한 열공급의 정지시에는 정지하는 날의 5일 전에 그 내용을 열사용자에게 미리 통보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정지 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3) 공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당한 열사용자가 수급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그 사유를 해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열공급을 재개합니다.

### 제18조(손해배상의 면책)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열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계약을 폐지하였을 때.
- ②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을 제한하였거나 사용을 일시 중지하였을 때.
- ③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을 정지하였을 때.
- ④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제19조(대관업무 협조)

(1) 공급자가 법령에 따라 열사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열사용자는 소정 기일 내에 정확한 자료를 공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의하여 공급자에게 이미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열사용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 5장 열공급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제20조(시설의 설치 및 건설비용 부담)

(1) 열공급시설에 관한 설치의 부담과 책임으로 하고, 열사용자 시설에 관한 설치의 부담과 책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열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부담금액, 산정내역,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은 열공급시설의 건설 목적, 용도, 비용, 사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공급자와 열사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제21조(수급지점 및 재산한계점)

(1) 열사용자와 공급자의 수급이 이어지는 지점(이하 “수급지점”이라 합니다)은 원칙적으로 열사용자 시설과 열공급시설이 만나는 접속점(이하 “재산 한계점”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2) 재산 한계점까지의 열공급시설은 공급자가 시설 소유하고, 재산 한계점 이후의 시설은 열사용자가 시설 소유하여 각각 유지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3) 공급자는 열사용자의 요청이 있고, 공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열사용자 소유시설을 인수하여 공급자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 제22조(보안 및 유지관리의 책임한계)

(1) 열공급 시설에 대한 보안은 공급자 시설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책임을 지고 열사용자 시설에 대하여는 열사용자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급자 구내에 설치된 열사용자 소유 시설에 대한 보안은 공급자가 책임지고 열사용자 구내에 설치된 공급자 소유 시설에 대한 보안은 열사용자가 책임집니다.

(2) 현장설비의 상태 또는 기술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자는 열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열사용자 시설을 보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비용은 열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수 이후의 보안 및 유지관리 책임은 열사용자가 집니다.

### 제23조(상대방 구내출입)

공급자 및 열사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 각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상대방의 토지 또는 건물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출입사유를 사전 통고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구내를 출입할 때는 상대방의 안전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 ① 수급시설의 설계, 시공 개수 또는 순서 및 점검을 할 경우.
- ② 제22조 제(2)항 또는 제24조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 ③ 이 규정에 위배되는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사용자 시설의 검사 또는 시험을 할 경우.
- ④ 계량설비의 점검 또는 검사를 할 경우.

### 제24조(조사 및 통보)

(1) 공급자는 열공급을 위한 열사용자 시설의 사용실태 및 시설기준의 적합성 여부와 열사용자 시설의 신설, 증설 또는 변경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양호함을,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을 지체없이 열사용자에게 서면 통지합니다.

### 제25조(조사의 종류)

제24조에 의한 조사의 종류는 다음 각호로 합니다.

- ① 시설의 신설, 증설 제사용 및 변경에 따른 조사.
- ② 정기조사.
- ③ 기타 필요시 실시되는 비정기 조사.

### 제26조(보안 및 조사에 대한 열사용자의 협력)

(1) 공급자는 제24조에 의한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열사용자 시설에 대한 재원 및 관련 도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열사용자는 이 조사업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2) 열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① 사용장소 내에 설치한 공급자의 열공급시설에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 ② 열사용자 시설에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것이 열공급시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제27조(공사의 시행 및 열사용자 시설의 개선)

열사용자가 공급자의 열공급시설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또는 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하였거나 이의 변경공사를 시행코자 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그 내용에 대하여 공급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열사용자 시설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보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급자는 열사용자에게 공사내용의 변경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28조(보수공사에 관한 협조)

공급자 및 열사용자는 열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각종 보수공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① 열사용자는 다음연도의 공장 월별 가동계획과 연차보수계획을 매년 11월말까지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공급자는 열사용자의 보수계획을 종합하여 열공급설비 보수 계획 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열사용자에게 통보합니다.
- ③ 열사용자는 열사용에 큰 변동은 초래하는 모든 개,보수공사 계획이 결정되는 즉시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④ 열사용자와 공급자는 열공급시설의 정비가 합리적이고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⑤ 열사용자와 공급자는 전호의 모든 계획이 변경되는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29조(보안통신설비)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자와 열사용자 간에 보안통신 설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 제 6장 열사용량의 계량 및 요금

### 제30조(계량설비의 부설)

- (1) 열사용 요금 계산에 필요한 계량설비 및 그 부속장치는 공급자 부담으로 시설 소유합니다.
- (2) 제(1)항의 계량설비는 공급자 계측기반 상에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열사용 요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이들 계량설비의 신호 검출장치는 열사용자로 향하는 열공급관로 분기점 이후 적절한 장소에 설치합니다.
- (3) 증기계량설비에는 온도 압력 검출장치를 포함하여, 수급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한 순시 자동보상장치를 부설합니다.

### 제31조(계량설비의 검사)

- (1) 요금 계산에 사용되는 계량설비는 열사용자 입회하에 매분기 1회 공급자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상호 봉인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공급자 또는 열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별도로 검사기간을 정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계량설비 검사에 있어서 공급자가 통고한 시간에 열사용자가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를 공급자에게 일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급자 단독으로 시행하여 그 결과를 열사용자에게 통보합니다.

### 제32조(계량설비의 허용오차)

열공급 계량설비의 종합 허용오차는 1% 이내로 합니다.

### 제33조(검침)

- (1) 검침은 중간검침과 정기검침으로 구분합니다.
- (2) 중간검침은 매월 10일 및 20일까지의 계량량에 대하여 각각 익일에 공급자 단독으로 실시하여 열사용자에 통보합니다.
-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을 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그때마다 중간검침을 할 수 있습니다.
- (4) 정기검침은 열사용자 입회하에 월말까지의 계량량에 대하여 익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5) 제(4)항의 지정된 시간에 열사용자가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침을 공급자에게 일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급자 단독으로 검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열사용자에게 통보합니다.

### 제34조(사용량의 계량)

열사용량의 계량은 제3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량기의 검침에 의

하여 계량하고, 사용량은 당회 검침일의 검침량에서 전회 검침일의 검침량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제35조(사용량의 협정)

(1) 계량기의 고장이나 기타 사유로 열사용량을 정확히 계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열사용량을 열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이하 "사용량의 협정"이라 합니다)합니다.

-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설비 검사기간 중의 사용량 정산은 검사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당일 자정까지의 평균사용량으로 정산합니다.
  - ② 1일 이내의 계량설비 고장으로 인한 사용량 정산은 제①호에 준합니다.
  - ③ 사용량이 계량 최대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대 계량량의 1.5 배로 정산합니다.
  - ④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오차의 수정에 의한 정산은 협정치 = [계량된 실적치 ÷ {100% + (±오차율)}] × 100%로 하며 이 경우 협정기간은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오차의 발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한 시점부터 소급하며 그 발생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량설비 검사시점부터 전회 검사일자 또는 최종 정기검침일 중에서 가까운 쪽 기간동안 당월 오차물량의 2분의 1로 정산합니다.
  - ⑤ 제①호 내지 제④호 이외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2) 제(1)항에 의한 사용량의 협정은 해당월에 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협정되지 않은 사용량에 대해서는 익월분에서 정산처리할 수 있습니다.
- (3) 열사용자는 당월 검침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검치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공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열사용자와 협의하여 시정합니다.

### 제36조(요금의 계산)

- (1) 열사용 요금은 제3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사용량을 기준으로 (별첨1) 열사용 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 (2) 공급자가 열사용자의 응축수를 회수하는 경우 응축수 회수요금은 (별첨1) 열사용 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 (3) 열 사용 요금 단가는 공급자가 열사용자와 협의하여 수급계약에서 결정합니다.

## 제 7장 기타

### 제37조(단수처리)

- (1) 계약량의 단위는 1시간당 톤(MT/HR)으로 하며 0.1미만은 4사5입 합니다.
- (2) 사용량은 단위는 톤(MT)으로 하며 1미만은 4사5입 합니다.
- (3) 요금의 계산 및 기타 계산에서 합계액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4) 계량설비의 오차율은 0.1% 미만은 4사5입 합니다.

### 제38조(일수계산)

- (1) 다음 각호의 경우 요금계산은 사용일수에 따라 일수 계산을 합니다.
  - ① 수급계약에 의해 사용이 개시되었을 경우.
  - ② 수급계약 또는 요금 단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 ③ 수급계약이 종결 또는 폐지되었을 경우.
- (2) 사용일수의 계산에 있어 개시 또는 변경일은 포함하고 중지, 종결 및 폐지일은 제외합니다.

### 제 39조(요금의 청구 및 납부)

- (1) 공급자는 검침일로부터 6일 이내에 열사용 요금 청구 세금계산서를 발송하고 열사용자는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까지 공급자에게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정기검침 후 요금청구는 중간검침 요금 납부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청구합니다.
- (3) 열사용자가 제(1)항의 납부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공급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율은 공급자와 열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체된 열사용 요금과 지체상금은 납부일로부터 1개월되는 날까지 지불하여야 합니다.

### 제40조(요금정산)

당월분 요금의 계산결정 이후에 착오 등에 의한 요금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합니다.

### 제41조(열사용요금)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열사용 요금은 유가의 변동 등 열병합발전설비의 운영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급계약을 변경함으로써 변경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제42조(문서의 기록 및 보존)

- (1) 열공급과 관련된 제반 문서 중 공급자가 따로 정하는 중요문서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말을 기준으로 3년간 기록 보존합니다.
- (2)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로 열사용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 등의 열람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부 칙

제 1조 이 규정은 2023년 11 월 1일부로 시행합니다.



